

2026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공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유통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6년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6일
산업통상부 장관

1. 모집개요

□ 사업목적

- 브랜드 파워를 갖춘 온·오프라인 소비재 유통기업 선발을 통해 글로벌 유통플랫폼으로 육성하고 중소기업의 해외 동반진출을 지원

□ 모집규모 : 13개사

- ❶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유통기업(온라인·오프라인)(8개사)
- ❷ 자체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역직구 사업을 확대하는 유통기업(5개사)

□ 사업기간 : 2026. 4. 1. ~ 2026. 12. 31. (9개월)

□ 주무부처/운영기관 : 산업통상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 사업내용

- 한국 유통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매칭펀드 조성으로 유통플랫폼 해외진출 및 해외 역직구 활성화 지원

- 매칭펀드는 국고보조금(70%) + 기업부담금(30%)으로 구성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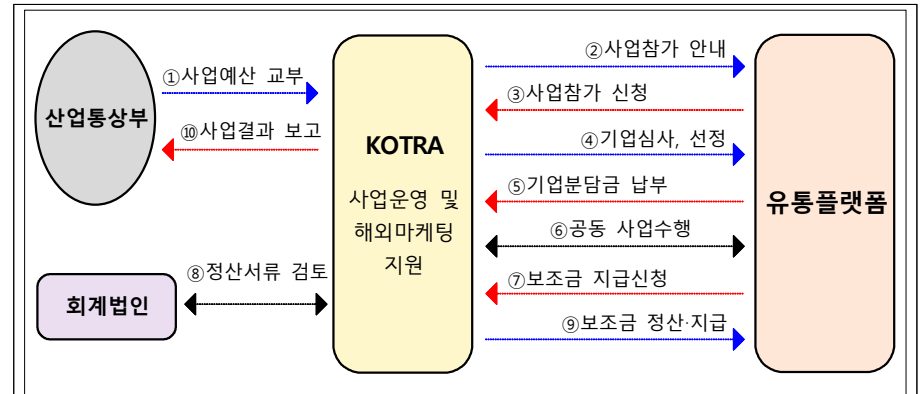
구분	국고보조금(70%)	기업 부담금(30%)	기업당 가용예산
① 유통망 플랫폼	44.0	19.0	63.0
② 온라인 역직구	7.9	3.4	11.3

- 참가기업 대상 중간평가(8월) 실시 후 우수기업 대상 추가 매칭펀드* 제공

* (유통망 플랫폼) 최대 2개사, 14억원(자부담 4.2억 포함)

(온라인 역직구) 최대 1개사, 3억원(자부담 0.9억 포함)

- 기업 수요에 맞게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마케팅사업을 직접 기획하여 수행한 뒤 운영기관에 정산 요청
- 조사/컨설팅, 브랜드 개발, 인증/IP 획득, 브랜드홍보, 국제운송 및 오프라인 마케팅 등(지원가능 서비스 세부내용 "8. 서비스 메뉴" 내용 참고)



[사업 매칭펀드 조성·정산 흐름도]

운영기관은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❶국고+❸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❷수혜기업(참여기업) 해외진출 활동에 따른 제반 비용 정산 신청건에 대해❸검토하여 ❹비용 정산

2. 지원요건 및 내용

□ 지원요건

- 중소기업 동반 해외 진출(신규 및 既진출 기업의 시장확대 포함)을 추진 하는 국내 유통 플랫폼 및 역직구물 운영 기업

필수사항	유통망 플랫폼	온라인 역직구
모집기업 수	8개사	5개사
지원가능 국가 수	최대 3개국* (중점 진출 2 + 신규진출 1) ☞ 단, 국내외 경제·외교적 변수 등 예외적 상황에 따라 심의를 통해 조정 가능	해당사항 없음
필수추진 과업	해외 현장 마케팅 최소 3회 이상 ☞ 팝업, 한류박람회 등 오프라인 행사, KOTRA 지원 서비스, 온라인 기획전 등	해외 현장 마케팅 최소 1회 이상
물류비 정산한도	10억원 이하 ☞ 국고보조금의 20% 내외로 제한 * 기업의 자체 물류망 대비 KOTRA 공동물류센터의 경쟁력이 높을 경우 적극 활용 권장	2억원 이하
동반진출 기업 수	유통 상품/서비스 관련 국내 중견·중소·소상공인 최소 50개사 이상 참가 (연간)	유통 상품/서비스 관련 국내 중견·중소·소상공인 최소 15개사 이상 참가 (연간)

신청 제외 대상

-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기관에 불량거래처로 등재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거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 보조금 부정수급 등 부정행위로 인해 사업 참여 제한 대상인 기업
- ◆ 사업개시일(2026. 4. 1.) 기준 산업부, 중기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통합형) 및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되어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기업
 - * 단, 유통망 플랫폼 유형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타 사업과 진출 대상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청 가능
- ◆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 영위 기업

업종 분류	품목코드	지원 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도박게임장비 등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47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중개 및 도소매업, 사행성, 사치성 상품 중개업 및 도소매업
정보통신업	58 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임대업	76390 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업종 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함

- ◆ 기타 세부 모집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 신청기업은 운영기관에서 신청 제외 대상 해당 여부를 문의받거나, 관련 증빙 서류 제출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료를 미제출하거나 협조하지 않을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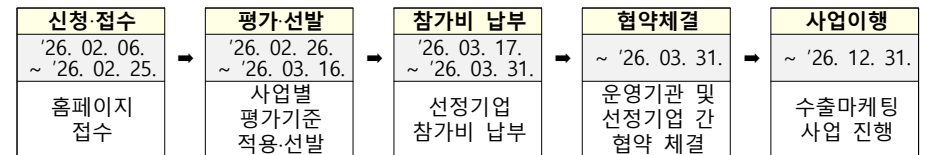
3. 참여기업 신청방법

- 신청방법 : KOTRA 무역투자 24 홈페이지 내 신청

☞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접속 및 일반회원 가입 후 myKOTRA에서 소속기업 등록 → ‘사업신청’ 클릭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명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 신청품 양식에 맞춰 작성 및 제출

- 신청기간 : ‘26. 02. 06.(금) ~ ‘26. 02. 25.(수) 16시 전 까지

- 진행절차



- 신청 시 구비 서류

구분	해당	연번	서식명	발급방법
필수	공통	1	사업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공통	2	신용정보 조회 및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공통	3	사업자 등록증명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공통	4	표준재무제표증명원(‘23~‘25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공통	5	회계감사보고서(‘23~‘25년)*	DART 공시 자료 인정
	공통	6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3~‘25년)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공통	7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빙(기업 대표자)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유통망	8	해외 매출액 증빙자료(‘23~‘25년)	기업 자체 보유 해외매출액 증빙 자료
	역직구	9	수출실적증명원(‘23~‘25년)	한국무역협회 혹은 한국무역통계진흥원에서 발급
	역직구	10	제품 해외발송 국가 리스트 증빙	한국무역협회 혹은 관세청 수출입 통계 시스템에서 발급
선택	공통	11	4대보험 가입자 명단	국민연금공단 혹은 고용보험공단에서 발급
	공통	12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22~‘24년)	동반성장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발급
	공통	13	운영기관 판단에 따른 추가 요청자료	별도 요청 예정

* (전항목) 신청일 기준 발급 2년 이내의 유효한 증빙이어야 함

** ‘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회계감사감사보고서 : 행정 및 회계일정 상, 접수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25년도 세무조정계산서로 우선 대체하여 제출하며 3.31까지 별도 제출 필요

*** 회계감사보고서 : 의무공시 미대상 기업으로 작성 의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표준재무제표증명원으로 대체(단, 온라인 역직구 유형 신청기업으로만 국한하며, 유통망 플랫폼 유형 기업은 제출 필수)

4. 평가 및 선정

□ 평가 및 선정절차

신청·접수	1차 평가	선정기업 발표(1차)	2차 평가	선정기업 최종발표	협약체결
2.6 ~ 2.25	2.26 ~ 3.8	3.9	3.12 ~ 3.13	3.16	3.17 ~ 3.31
신청 서류 및 자격 확인	계량 및 비계량 평가	1차 심사결과 발표	선정평가 위원회 PT발표	최종선정 및 참가비 입금 안내	참가비 입금 및 협약체결

□ 평가기준 : 해외진출 역량, 진출계획,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

○ 1차평가 평가항목

평가항목	중점사항
기업 경쟁력	해외 매출액, 수출액, 해외 매출액 성장률, 수출대상 국가 수 등
기업역량	재무건전성, 해외 영업 또는 마케팅 수행 역량 등
사업계획서 작성 충실도	해외 진출 전략, 사업비 활용 계획, 동반진출 기대효과 등

○ 2차평가 평가항목

- 1차 평가 선정기업 대상, KOTRA 본사 오프라인 PT발표를 통한 평가 진행 (발표 15분 / 질의응답 5분으로 구성)

* 기업별 발표 일정은 1차 선정기업 발표(3.10)시 개별 안내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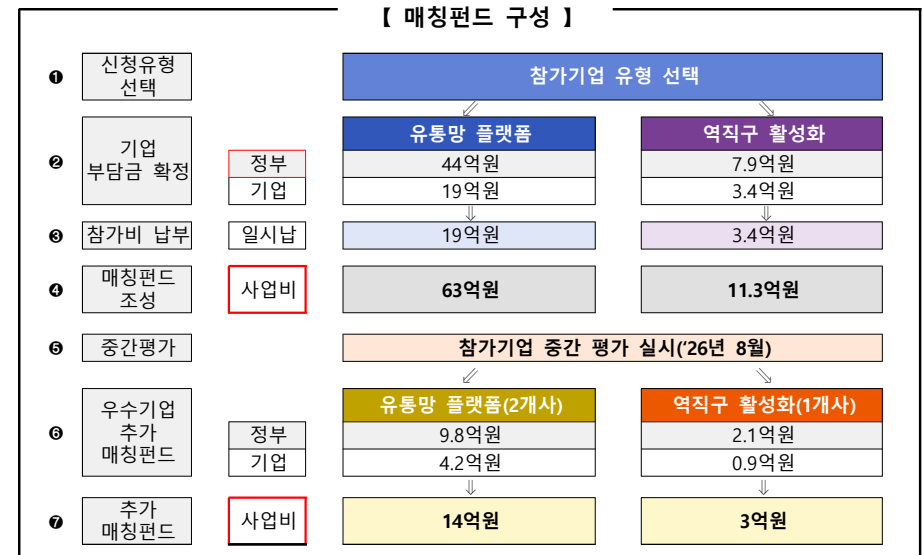
** 선정기업 1차 발표 후 2차 평가까지 일정이 촉박, PT자료 사전 준비 권고 (발표내용 구성 시, 공고문 내 '붙임3' PT자료 발표목차 참고 필수)

평가항목	중점사항		
해외마케팅 전략	타겟시장 설정 및 신규진출 혹은 진출확대를 위한 마케팅 전략의 타당성 등		
사업비 활용 계획	신청서 내용, 활용 목표, 사업비 계획 등의 구체성(수치, 근거) 및 우수성(목적적합도, 완성도) 등		
네트워크 및 조직력	해외 영업 또는 마케팅 수행 역량,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및 활용 수준 등		
현장 마케팅 계획	유통망 해외진출을 위한 기업 자체 행사의(연예기획사 협력 한류스타 공연 기간 팝업 운영, 인플루언서 마케팅 등) 계획성 및 기대효과 등		
정부기관 협업 계획	정부기관과의 협업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 노력도 및 사업의 구체성 등		
	< KOTRA 협업 공동 해외마케팅 사업 예시 >		
	구분	협업사업	협업예시
	단독 사업	유통망의 브랜드를 앞세운 팝업 스토어「○○○ 브랜드 데이」등 기업 자체 해외마케팅 사업	·해외마케팅 사업 참가 중소협력사 대상 B2B상담회 전담 지원
	연계 사업	국내외 전시회 및 수출상담회 한류박람회 등 KOTRA 기획사업 및 경제외교 등 비정기 사업	·한류박람회(6월두바이, 9월하노이) 참가를 통한 B2C, B2B 유통망관 운영 ·VIP 해외순방에 따른 경제외교 사업
제안 사업	진출희망국 해외마케팅 계획에 난항을 겪는 기업 대상 KOTRA 해외무역관 맞춤형 사업 제안	·팝업, 인플루언서 활용 라이브커머스 등 현지 상황에 맞춘 사업 기획	

5. 참가비 납부 및 사업비 정산

□ 매칭펀드 조성

- ① 신청 시 신청유형 선택(유통망 플랫폼 또는 역직구 활성화)
- ② 신청유형에 따라 총 사업비 중 기업 부담금 확정
- ③ 기업 선정 통보 후 별도 안내에 따라 참가비 입금(일시납 필수)
* 참가비 납부 기한 내 미납부 시 자동으로 선정 취소
- ④ 협약체결 및 서비스 개시



□ 사업비 정산 절차

- 집행 가능기간 : 협약개시일 ~ '26.11.30
- 서비스 이용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정산 신청
- 집행방식 : 선지출 후정산 원칙,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집행 가능 서비스 내 지출건에 대하여 사후정산 지원
- 정산 프로세스

선정기업	회계법인	KOTRA
매월 25일~말일 접수(3월~11월)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신청월의 익월 송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구비하여 회계법인으로 제출	정산서류 검토, KOTRA 제출	결과물 검토, 사업비 지급

6. 기타 유의사항

- ◆ 사업 신청 시 정보 입력 오류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 ◆ '25년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회계감사보고서를 세무조정계산서로 대체하여 제출한 뒤 선정되었더라도, 추후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및 회계감사보고서에 문제가 있거나 대체 자료와 사실이 다른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도 있음
- ◆ 유사사업 중복지원 여부 확인 필요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사업(중소벤처기업부) 등 타 기관 지원 국고 중복 수혜 불가
 - * 단, 유통망 플랫폼 유형을 신청하는 기업의 경우, 타 사업과 진출 대상국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되지 않음
- ◆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의 동일·유사사업을 통해 지원 받은 건을 중복 정산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 보조금 환수 및 사업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 예시) 특정 해외전시회 참가비용을 he기관의 '개별전시회 지원사업'으로 환급받고 동일 전시회 참가비를 중복 정산 신청 시
 - * 중복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세부사업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최대 5배)을 부과하며, 향후 정부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 기업분담금은 선정 후, 납기일 이내 1회납이 원칙이며, 불가피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 필수
- ◆ 사업선정 후 안내된 납기일 내 기업분담금 미납 시 사업의지가 없는 것으로 간주, 자동탈락 처리, 후보기업 대체
- ◆ 선정되어 협약체결 후 참여기업의 사정으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협약 시작일로부터 2년 간 신청자격 상실 및 기업분담금 환급 불가
- ◆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근거, 협약 종료 시점에 매칭펀드 잔액 15% 초과 시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 간 사업 참여에 불이익 있음

<매칭펀드 미사용에 따른 제재 사항>

매칭펀드 잔액	제재
30% 초과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참여제한
15% 초과 ~ 30% 이하	협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선정평가 시 5점 감점
15% 이하	제재 없음

- ◆ 사업기간 내 부가세 미납부 시 2년 참여제한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
- ◆ 본 공고문에 기재되지 않은 상세내용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며, 사업신청 및 선정 후 지침 등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

7. 문의처

구분	전화번호
KOTRA 서비스산업팀	02-3460-7614, 3251, 3319
	moouuk@kotra.or.kr

8. 집행 가능 분야(예시)

대분류	서비스	내용(예시)
집행 가능 분야 예시	① KOTRA 마케팅 서비스	서비스거점 ■ 타깃지역 서비스거점(KOTRA 무역관) 전담직원 활용, 참가기업 수요 맞춤형 온디맨드 서비스 제공
		비즈니스출장 ■ 유통망 현지 파트너 발굴을 위한 맞춤형 비즈니스 실사 등 - 희망지역 출장 지원, 바이어상담, 산업별 기관 방문 등
		미스터리쇼퍼 ■ 해외점포 점검 및 경쟁사 점포조사를 통해 현지점포관리 및 타깃시장 전략수립 계획 등 활용
	② 조사/컨설팅	일반 컨설팅 ■ 해외진출 전략수립 및 시장확장을 위한 컨설팅 - 사업성 검토(해외진출 사업성 및 타깃국가 시장성) - 전략수립(현지화 및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등)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해외진출을 위한 법무·세무·회계 관련 전문 컨설팅 - 수출목적을 위한 법률자문, 세무자문, 회계감사, 해외 법인설립 등 법무·세무·회계 분야 전반의 컨설팅
	③ 브랜드 개발	디자인 제작 ■ 해외진출에 필요한 진출국가 외국어 디자인 개발 - 외국어 종이/전자 카탈로그 제작, 포장디자인, BI·CI 등
		시스템 구축 ■ 유통망 플랫폼 및 온라인 역직구물 개발 및 운영 - 홈페이지(반응형) 및 모바일앱 개발, 상세페이지 제작, 간편결제시스템 개선 등
		통번역 ■ 수출을 위한 기업의 활동에 필요한 일체 통번역 서비스 - 계약/법률 문서, 홈페이지 번역, 비즈니스/기술문서 등 통번역 분야 전반 유사 서비스
	④ 인증/IP	서류대행/등록 ■ 수출·현지진출 관련 필요 서류 작성 대행 및 현지 등록 - 계약서, 결제, 통관/선적 등 필요 서류 작성, FTA 원산지 관련서류 등록, AEO 인증획득지원 등
		해외규격인증 ■ 유통기업 및 플랫폼 입점기업 해외인증 취득 비용 지원 - Halal 인증, NMPA 등 진출국가 해외인증 취득에 성공한 적합 판정 결과물(시험·심사·인증 등)
		IP등록 ■ 특허·지재권 취득 등 해당 분야 전문 서비스 - 현지 특허·지재권 등록, 지재권 분쟁 지원 서비스 등
	⑤ 브랜드홍보	홍보/광고 ■ 기업, 브랜드, 유통망의 해외 마케팅을 위한 홍보 및 광고 - TV·PPL, 신문/잡지, 인플루언서/SNS 활용 마케팅, 라이브 커머스, 주요 검색엔진 노출 광고 등 광고매체 활용 홍보/광고 분야 전반에 걸친 유사 서비스
	⑥ 국제운송	국제운송비 및 물류비 ■ 수출자가 부담하는 국제운송비 및 물류비 - 유통기업 부담 국제운송료(해운·항공), 국내외 물류비, 물류 창고비 등
	⑦ 직접마케팅	오프라인 행사비용 ■ 수출지원 관련 행사 기획·지원 및 해외 영업 지원 - 한류박람회, 현지 전시회 참가 운영비, Pop-up 스토어 및 판촉 행사 운영비, 상설매장 운영 등
		출장비 ■ 행사 참가 및 운영에 따른 담당자 출장여비 - Pop-up 및 판촉행사 등 국내외 오프라인 행사 개최에 따른 숙박비 및 운임비(항공료, 철도비 등)

- 해외 진출을 위한 서비스로 보기 어려운 건에 대해서 원칙적 정산 불가
 - 참여기업 인건비 및 제공비(기업 통신비 등), 자산 취득비, 제품 생산비, 선물비, 기념품 제작비 등
 - 해외송금 수수료, 환전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 및 해외 현지 납부 세금 등
- * 특정 서비스 및 서비스 세부 항목의 지원 가능 여부가 불명확할 경우, KOTRA 지정 회계법인 사전 확인하며, 판단이 어려운 경우 KOTRA 운영기관 최종 확인 필요

2026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기업명		
담당자	이름/직책	
	연락처	※ 반드시 주위 연락 소통을 위해 휴대폰 번호를 기입 요청
	이메일	

2026. 2. XX

※ 본 양식은 '2026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양식입니다.

- 동 신청서는 선정 평가 시 주요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선정된 기업은 본 신청서에 작성된 사업 운영 및 예산 계획을 근거로 연간 사업이 지원될 예정이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은 필요시 칸을 늘려 페이지를 추가하거나 상세히 기술 가능)
- 신청 시 동 신청서를 누락할 경우 선정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시 반드시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1. 기업 일반현황

신청 유형	유통망플랫폼	☐ 종합 ☐ 패션 ☐ 뷰티 ☐ 식품 ☐ 라이프스타일 ☐ 기타			
	역직구활성화	☐ 신규진출 ☐ 진출확대			
기업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연도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종업원 수	
담당자 정보		부서명			
		연락처	사무실/휴대전화 연락처 및 e-mail		
해외진출 현황		진출국가	복수인 경우 진출현황에 대해 모두 기재 요망		
		진출현황			
		☐ 수혜, ☐ 수혜이력 없음			
'26년 타 기관 정부지원 사업 중복 신청·수혜 여부		신청·수혜 이력 있을시 해당 사업명/관계기관명 작성			

* 양식외 관련 사업계획서 등 자료 별첨 가능

* 양식외 관련 사업계획서 등 자료 별첨 가능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중심적으로 평가

상기와 같이 2026년도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과제를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서비스산업팀 귀하

기업(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2026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 참가를 위하여 아래의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정보 수집·이용 내역

- **수집목적** : ‘2026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사업 참여를 위한 접수, 정책자료 활용, 고객만족도 조사, 휴·폐업 확인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 수출입 실적 조회를 위한 정보, 서비스 제공 기간 동안의 바이어 발굴 등을 위한 국내 및 해외 무역관의 연락,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 **수집항목**
 - (기업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회사주소 등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 등에 기재된 기업 정보
 - (개인정보) 담당자 성명, 직위, 회사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까지

※ 위의 기업(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수집항목에 대한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기업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조회 동의서

“2026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참가기업 제출자료에 따른 기업 평가 및 연계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래의 기업·개인 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제공목적** : 신용등급, 납세실적, 수출입실적 등 참가기업 필수 제출자료에 따른 기업 평가 및 연계 지원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 ‘2026 유통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운영대행사 및 유관기관
- **제공항목** : 기업(개인) 정보 수집·이용 동의 내역 및 참가기업 필수 제출자료
- **보유기간** : 동의일로부터 2년까지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기업·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26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I. 기업현황 (작성 노력도 비중 10%)

1. 기업 일반 소개
2. 영업 현황 (국내/해외 포함, 해외진출 현황 포함)
3. 사업 책임자 이력사항
4. 해외사업 전담인력 현황(대표자 포함)

II. 해외진출 추진계획 (50%)

1. 해외진출 희망 유통망(역직구물) 소개 및 설명
2. 타겟 국가(도시) 및 선정 사유
 - * 중점 진출 2개국 / 신규진출 1개국, 역직구 기업과 같은 경우 별도 제한 없음
3. 목표시장 진출 계획 및 전략
4. 정부(KOTRA 등 유관기관 포함) 협업 해외마케팅 사업 추진계획

III. 매칭펀드 활용계획 및 사업 예상성과(40%)

1. 매칭펀드 활용 계획(사업 분기별 매칭펀드 집행률 포함)
 - * 기업 자체적으로 자사의 해외진출을 위해 필요한 요소를 진단하여 작성
 - ** 서비스별 소요예산의 합이 신청유형별 매칭펀드 조성액과 일치하게 작성 (진출 희망국가가 복수인 경우 국가별 합계가 매칭펀드와 일치 필수)
2. 진출에 따른 사업성과(3개년)
 - * 목표하는 구체적인 숫자와 추산근거 제시

신청유형별 KPI 평가 계획

- **(유통플랫폼)** 참가기업 해외 매출액(목표국) 증가율
 - 목표 : ('26년) 4% → ('27년) 5% → ('28년) 6%
 - 측정산식 : (당해연도 해외매출액 - 전년도 해외매출액) ÷ 전년도 해외매출액 × 100%
 - 수집방법 : 기업 공시 재무제표 및 기업 증빙자료 등
- **(온라인역직구)** 참가기업 해외 수출 증가율
 - 목표 : ('26년) 3% → ('27년) 4% → ('28년) 5%
 - 측정산식 : (당해연도 해외매출액 - 전년도 해외매출액) ÷ 전년도 해외매출액 × 100%
 - 증빙자료 : 무역협회 수출 통계 및 기업 증빙자료 등

※ 발표자료는 PPT에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위원이 서비스에 대한 구체성 및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의 목차는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에 그 목적이 있기에, 기업의 필요에 따라 목차의 통합 또는 추가 세분화가 가능하나, 상기 제시 목차의 주요 내용은 모두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표자료 제출 시 폰트 이슈 등을 고려하여 제출 시 PDF파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